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소관부서 : 기업지원과

제정 2020·9·30 규칙 제684호

제1조(「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2조(「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9조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11호 서식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3조(「이천시 기업 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이천시 기업 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중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제2조 각호 외 부분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하며, “근로자”를 “노동자”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모범근로자”를 “모범노동자”로 하며,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3조, 제4조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4조(「이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이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5조(「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소속기관별 사무분장의 노인장애인과 제40호 및 기업지원과 제16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